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51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35,680,80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41,842,080원, 지방교육세 7,136,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주주로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지분 50.01%), D 주식회사(지분 5%), E 주식회사(지분 39.99%), F 주식회사(지분 5%)가 있다. 또한 B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다.

○ B는 2020년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구 G아파트 61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 피고는 2020. 9. 8.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년 9월 재산세 35,680,80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41,842,080원, 지방교육세 7,136,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1호증의2,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여 임대한 경우도 이 사건 제1규정에서 정하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제1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고 한다). B는 국가가 C를 통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01%를 소유하고 있어 위 규정상 재산세 감면대상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이 사건 제1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



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제1조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특혜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규정에 대한 해석도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B의 주식 50.0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소유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C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자이고, 국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



으로 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9조의6,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일부 지방공사의 주식 소유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법인격과 달리 볼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주식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법인격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조건 조문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에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로 변경되었다. 개정 법률은 조문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타 법령에서 의제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출자한 경우가 아닌 그 소유주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만 대상)은 국가 등이 직접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을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별지1]

순번	과세물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교육세
1		119,850	10,950
2		119,850	10,950
3		119,850	10,950
4		119,850	10,950
5		119,850	10,950
6		119,850	10,950
7		119,850	10,950
8		119,850	10,950
9		124,200	11,400
10		124,200	11,400
11		124,200	11,400
12		124,200	11,400
13		124,200	11,400
14		124,200	11,400
15		124,200	11,400
16		124,200	11,400
17		126,810	11,670
18		126,810	11,670
19		126,810	11,670
20		126,810	11,670
21		126,810	11,670
22		126,810	11,670
23		126,810	11,670
24		126,810	11,670
25		126,810	11,670
26		126,810	11,670
27		126,810	11,670
28		126,810	11,670
29		126,810	11,670
30		126,810	11,670
31		126,810	11,670
32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33		126,810	11,670
34		126,810	11,670
35		126,810	11,670
36		126,810	11,670
37		128,550	11,850
38		128,550	11,850
39		128,550	11,850
40		128,550	11,850
41		128,550	11,850
42		128,550	11,850
43		128,550	11,850
44		128,550	11,850
45		131,160	12,120
46		131,160	12,120
47		131,160	12,120
48		131,160	12,120
49		131,160	12,120
50		131,160	12,120
51		131,160	12,120
52		131,160	12,120
53		131,160	12,120
54		131,160	12,120
55		131,160	12,120
56		131,160	12,120
57		116,370	10,590
58		116,370	10,590
59		119,850	10,950
60		119,850	10,950
61		119,850	10,950
62		119,850	10,950
63		119,850	10,950
64		119,850	10,950
65		119,850	10,950
66		119,850	10,950
67		124,200	11,4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68		124,200	11,400
69		124,200	11,400
70		124,200	11,400
71		124,200	11,400
72		124,200	11,400
73		124,200	11,400
74		124,200	11,400
75		126,810	11,670
76		126,810	11,670
77		126,810	11,670
78		126,810	11,670
79		126,810	11,670
80		126,810	11,670
81		126,810	11,670
82		126,810	11,670
83		126,810	11,670
84		126,810	11,670
85		126,810	11,670
86		126,810	11,670
87		126,810	11,670
88		126,810	11,670
89		126,810	11,670
90		126,810	11,670
91		126,810	11,670
92		126,810	11,670
93		126,810	11,670
94		126,810	11,670
95		128,550	11,850
96		128,550	11,850
97		128,550	11,850
98		128,550	11,850
99		128,550	11,850
100		128,550	11,850
101		128,550	11,850
102		128,550	11,8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103		131,160	12,120
104		131,160	12,120
105		131,160	12,120
106		131,160	12,120
107		131,160	12,120
108		131,160	12,120
109		131,160	12,120
110		131,160	12,120
111		131,160	12,120
112		131,160	12,120
113		131,160	12,120
114		131,160	12,120
115		131,160	12,120
116		131,160	12,120
117		131,160	12,120
118		131,160	12,120
119		116,370	10,590
120		116,370	10,590
121		116,370	10,590
122		119,850	10,950
123		119,850	10,950
124		119,850	10,950
125		119,850	10,950
126		119,850	10,950
127		119,850	10,950
128		119,850	10,950
129		119,850	10,950
130		119,850	10,950
131		119,850	10,950
132		124,200	11,400
133		124,200	11,400
134		124,200	11,400
135		124,200	11,400
136		124,200	11,400
137		124,200	11,4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138		124,200	11,400
139		124,200	11,400
140		124,200	11,400
141		124,200	11,400
142		126,810	11,670
143		126,810	11,670
144		126,810	11,670
145		126,810	11,670
146		126,810	11,670
147		126,810	11,670
148		126,810	11,670
149		126,810	11,670
150		126,810	11,670
151		126,810	11,670
152		126,810	11,670
153		126,810	11,670
154		126,810	11,670
155		126,810	11,670
156		126,810	11,670
157		126,810	11,670
158		126,810	11,670
159		126,810	11,670
160		126,810	11,670
161		126,810	11,670
162		126,810	11,670
163		126,810	11,670
164		126,810	11,670
165		126,810	11,670
166		126,810	11,670
167		128,550	11,850
168		128,550	11,850
169		128,550	11,850
170		128,550	11,850
171		128,550	11,850
172		128,550	11,850

2022.08.26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173		128,550	11,850
174		128,550	11,850
175		128,550	11,850
176		128,550	11,850
177		131,160	12,120
178		131,160	12,120
179		131,160	12,120
180		131,160	12,120
181		131,160	12,120
182		131,160	12,120
183		131,160	12,120
184		131,160	12,120
185		131,160	12,120
186		131,160	12,120
187		131,160	12,120
188		131,160	12,120
189		131,160	12,120
190		131,160	12,120
191		131,160	12,120
192		131,160	12,120
193		131,160	12,120
194		131,160	12,120
195		131,160	12,120
196		131,160	12,120
197		131,160	12,120
198		131,160	12,120
199		131,160	12,120
200		131,160	12,120
201		131,160	12,120
202		131,160	12,120
203		131,160	12,120
204		131,160	12,120
205		131,160	12,120
206		131,160	12,120
207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208		131,160	12,120
209		131,160	12,120
210		131,160	12,120
211		131,160	12,120
212		131,160	12,120
213		131,160	12,120
214		131,160	12,120
215		131,160	12,120
216		131,160	12,120
217		116,370	10,590
218		116,370	10,590
219		116,370	10,590
220		119,850	10,950
221		119,850	10,950
222		119,850	10,950
223		119,850	10,950
224		119,850	10,950
225		119,850	10,950
226		119,850	10,950
227		119,850	10,950
228		119,850	10,950
229		119,850	10,950
230		124,200	11,400
231		124,200	11,400
232		124,200	11,400
233		124,200	11,400
234		124,200	11,400
235		124,200	11,400
236		124,200	11,400
237		124,200	11,400
238		124,200	11,400
239		124,200	11,400
240		126,810	11,670
241		126,810	11,670
242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243		126,810	11,670
244		126,810	11,670
245		126,810	11,670
246		126,810	11,670
247		126,810	11,670
248		126,810	11,670
249		126,810	11,670
250		126,810	11,670
251		126,810	11,670
252		126,810	11,670
253		126,810	11,670
254		126,810	11,670
255		126,810	11,670
256		126,810	11,670
257		126,810	11,670
258		126,810	11,670
259		126,810	11,670
260		126,810	11,670
261		126,810	11,670
262		126,810	11,670
263		126,810	11,670
264		126,810	11,670
265		128,550	11,850
266		128,550	11,850
267		128,550	11,850
268		128,550	11,850
269		128,550	11,850
270		128,550	11,850
271		128,550	11,850
272		128,550	11,850
273		128,550	11,850
274		128,550	11,850
275		131,160	12,120
276		131,160	12,120
277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278		131,160	12,120
279		131,160	12,120
280		131,160	12,120
281		131,160	12,120
282		131,160	12,120
283		131,160	12,120
284		131,160	12,120
285		131,160	12,120
286		131,160	12,120
287		131,160	12,120
288		131,160	12,120
289		131,160	12,120
290		131,160	12,120
291		131,160	12,120
292		131,160	12,120
293		131,160	12,120
294		131,160	12,120
295		131,160	12,120
296		131,160	12,120
297		131,160	12,120
298		131,160	12,120
299		131,160	12,120
300		131,160	12,120
301		131,160	12,120
302		131,160	12,120
303		131,160	12,120
304		131,160	12,120
305		131,160	12,120
306		131,160	12,120
307		131,160	12,120
308		131,160	12,120
309		131,160	12,120
310		131,160	12,120
311		131,160	12,120
312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313		131,160	12,120
314		131,160	12,120
315		131,160	12,120
316		131,160	12,120
317		131,160	12,120
318		131,160	12,120
319		131,160	12,120
320		131,160	12,120
321		131,160	12,120
322		131,160	12,120
323		131,160	12,120
324		131,160	12,120
325		131,160	12,120
326		131,160	12,120
327		131,160	12,120
328		131,160	12,120
329		131,160	12,120
330		131,160	12,120
331		131,160	12,120
332		131,160	12,120
333		131,160	12,120
334		131,160	12,120
335		116,370	10,590
336		116,370	10,590
337		119,850	10,950
338		119,850	10,950
339		119,850	10,950
340		119,850	10,950
341		119,850	10,950
342		119,850	10,950
343		119,850	10,950
344		119,850	10,950
345		124,200	11,400
346		124,200	11,400
347		124,200	11,4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348		124,200	11,400
349		124,200	11,400
350		124,200	11,400
351		124,200	11,400
352		124,200	11,400
353		126,810	11,670
354		126,810	11,670
355		126,810	11,670
356		126,810	11,670
357		126,810	11,670
358		126,810	11,670
359		126,810	11,670
360		126,810	11,670
361		126,810	11,670
362		126,810	11,670
363		126,810	11,670
364		126,810	11,670
365		126,810	11,670
366		126,810	11,670
367		126,810	11,670
368		126,810	11,670
369		126,810	11,670
370		126,810	11,670
371		126,810	11,670
372		126,810	11,670
373		128,550	11,850
374		128,550	11,850
375		128,550	11,850
376		128,550	11,850
377		128,550	11,850
378		128,550	11,850
379		128,550	11,850
380		128,550	11,850
381		131,160	12,120
382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383		131,160	12,120
384		131,160	12,120
385		131,160	12,120
386		131,160	12,120
387		131,160	12,120
388		131,160	12,120
389		131,160	12,120
390		131,160	12,120
391		131,160	12,120
392		131,160	12,120
393		131,160	12,120
394		131,160	12,120
395		131,160	12,120
396		131,160	12,120
397		131,160	12,120
398		131,160	12,120
399		131,160	12,120
400		131,160	12,120
401		131,160	12,120
402		131,160	12,120
403		131,160	12,120
404		131,160	12,120
405		131,160	12,120
406		131,160	12,120
407		131,160	12,120
408		131,160	12,120
409		131,160	12,120
410		131,160	12,120
411		131,160	12,120
412		131,160	12,120
413		131,160	12,120
414		131,160	12,120
415		131,160	12,120
416		131,160	12,120
417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418		131,160	12,120
419		131,160	12,120
420		131,160	12,120
421		131,160	12,120
422		131,160	12,120
423		131,160	12,120
424		131,160	12,120
425		131,160	12,120
426		131,160	12,120
427		131,160	12,120
428		131,160	12,120
429		116,370	10,590
430		116,370	10,590
431		116,370	10,590
432		116,370	10,590
433		119,850	10,950
434		119,850	10,950
435		119,850	10,950
436		119,850	10,950
437		119,850	10,950
438		119,850	10,950
439		119,850	10,950
440		119,850	10,950
441		124,200	11,400
442		124,200	11,400
443		124,200	11,400
444		124,200	11,400
445		124,200	11,400
446		124,200	11,400
447		124,200	11,400
448		124,200	11,400
449		126,810	11,670
450		126,810	11,670
451		126,810	11,670
452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453		126,810	11,670
454		126,810	11,670
455		126,810	11,670
456		126,810	11,670
457		126,810	11,670
458		126,810	11,670
459		126,810	11,670
460		126,810	11,670
461		126,810	11,670
462		126,810	11,670
463		126,810	11,670
464		126,810	11,670
465		126,810	11,670
466		126,810	11,670
467		126,810	11,670
468		126,810	11,670
469		128,550	11,850
470		128,550	11,850
471		128,550	11,850
472		128,550	11,850
473		128,550	11,850
474		128,550	11,850
475		128,550	11,850
476		128,550	11,850
477		131,160	12,120
478		131,160	12,120
479		131,160	12,120
480		131,160	12,120
481		131,160	12,120
482		131,160	12,120
483		131,160	12,120
484		131,160	12,120
485		131,160	12,120
486		131,160	12,120
487		131,160	12,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488		131,160	12,120
489		131,160	12,120
490		131,160	12,120
491		131,160	12,120
492		131,160	12,120
493		131,160	12,120
494		131,160	12,120
495		131,160	12,120
496		131,160	12,120
497		131,160	12,120
498		131,160	12,120
499		131,160	12,120
500		131,160	12,120
501		131,160	12,120
502		131,160	12,120
503		131,160	12,120
504		131,160	12,120
505		131,160	12,120
506		131,160	12,120
507		131,160	12,120
508		131,160	12,120
509		116,370	10,590
510		116,370	10,590
511		119,850	10,950
512		119,850	10,950
513		119,850	10,950
514		119,850	10,950
515		119,850	10,950
516		124,200	11,400
517		124,200	11,400
518		124,200	11,400
519		124,200	11,400
520		124,200	11,400
521		124,200	11,400
522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523		126,810	11,670
524		126,810	11,670
525		126,810	11,670
526		126,810	11,670
527		126,810	11,670
528		126,810	11,670
529		126,810	11,670
530		126,810	11,670
531		126,810	11,670
532		126,810	11,670
533		126,810	11,670
534		126,810	11,670
535		126,810	11,670
536		126,810	11,670
537		128,550	11,850
538		128,550	11,850
539		128,550	11,850
540		128,550	11,850
541		128,550	11,850
542		128,550	11,850
543		116,370	10,590
544		116,370	10,590
545		119,850	10,950
546		119,850	10,950
547		119,850	10,950
548		119,850	10,950
549		119,850	10,950
550		124,200	11,400
551		124,200	11,400
552		124,200	11,400
553		124,200	11,400
554		124,200	11,400
555		124,200	11,400
556		126,810	11,670
557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558		126,810	11,670
559		126,810	11,670
560		126,810	11,670
561		126,810	11,670
562		126,810	11,670
563		126,810	11,670
564		126,810	11,670
565		126,810	11,670
566		126,810	11,670
567		126,810	11,670
568		126,810	11,670
569		126,810	11,670
570		126,810	11,670
571		128,550	11,850
572		128,550	11,850
573		128,550	11,850
574		128,550	11,850
575		128,550	11,850
576		128,550	11,850
577		116,370	10,590
578		116,370	10,590
579		119,850	10,950
580		119,850	10,950
581		119,850	10,950
582		119,850	10,950
583		119,850	10,950
584		124,200	11,400
585		124,200	11,400
586		124,200	11,400
587		124,200	11,400
588		124,200	11,400
589		124,200	11,400
590		126,810	11,670
591		126,810	11,670
592		126,810	11,6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26

593		126,810	11,670
594		126,810	11,670
595		126,810	11,670
596		126,810	11,670
597		126,810	11,670
598		126,810	11,670
599		126,810	11,670
600		126,810	11,670
601		126,810	11,670
602		126,810	11,670
603		126,810	11,670
604		126,810	11,670
605		128,550	11,850
606		128,550	11,850
607		128,550	11,850
608		128,550	11,850
609		128,550	11,850
610		128,550	11,850



[별지2]

관련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지상권·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



율을 말한다.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3조(출자)

-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



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끝.